

2024-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1차(재학생대상) 선발 계획(안)

1. 목적

- 부모님의 실직, 부도, 자연재해, 가축전염병,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

2. 신청대상자: 2024-2학기에 등록을 필한 재학생(등록휴학생 포함)

가. 2024-2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, 외국인 제외

나. 2024-2학기 복학생은 10월 중 선발 예정

3. 신청자격

가. **직전학기(2024-1학기) 성적이 평점 2.0 이상인 자**

나.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(등록휴학생 수혜가능,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)

다.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(**동일한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는 자는 선발제외, 재학 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**)

4. 신청유형(하나 이상 해당자)

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(2023.06.01. 이후 실직자만 해당)

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,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·어민(2022.06.01.일자 이후)

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(10대 암, 중증질환 등)으로 인한 가정내 **근로 소득자의 부재(1년이상 투병, 본인은 해당없음)**

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(2023.06.01. 이후)

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(본인 포함) 이상인 자

⑥ 부·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(정도가 심한 장애인(법령개정전1~3급))으로서 소득분위 8구간(2024-2학기 소득구간) 이하인 자

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 8구간(2024-2학기 소득구간) 이하인 자

⑧ 다자녀(3명 이상)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(단,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)

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,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(**2024-2학기 소득분위 4구간 이하인 자**)

5. 선발인원 및 예산

가. 선발인원: 42명 내외

나. 1인당 장학금: 최대 100만원(**등록금 범위내 지급**)

다. 예산: 42,000,000원

라. 지급방법: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

6. 단과대학별 배정인원(재학인원 * 0.5%기준): 지급가능 예산에 따라 선발인원 조정 가능

| 단과대학 | 인원(명) | 단과대학 | 인원(명)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임권택영화예술대학 | 2 | 글로벌비즈니스대학 | 9 |
| 디자인대학 | 6 | 바이오헬스융합대학 | 10 |
| 미디어콘텐츠대학 | 5 | 사회과학대학 | 3 |
| 소프트웨어융합대학 | 7 | 합계 | 42 |

※ 입학 시 기본적으로 장학혜택이 주어지는 단과대학(학과)은 배정 제외(미래커리어대학, 캠퍼스아시아학과)

7. 세부선발일정

| 구분 | 일자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제공지 | 2024.06.24. | 홈페이지 공지 및 단과대학 안내 |
| 학생신청기간 | 2024.07.01.(월) ~ 07.05.(금) |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: 각 단과대학(학과) 사무실 |
| 단과대학(학과)심사 | 2024.07.08.(월) ~ 07.10.(수) | 회의를 통해 대상자 및 순위 결정(회의록 필수) |
| 장학팀회신 | 2024.07.12.(금) | 공문 회신(회의록, 대상자 제출 서류 첨부) |
| 장학팀심사 | 2024.07.15.(월) ~ | 정원 고려한 단과대학별 인원 최종 확정 및 요건 심사 |
| 장학금 지급 | 2024년 8월 초 등록금 고지서 감면 | 2024-2학기 등록금 선감면 |

8. 제출서류

| 제출서류 (각1부) | 신청자 공통 | 필수서류: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(부모 명의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| 개 별 | <p>※ 본인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</p> <p>1-1.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: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(비자발적 실적)</p> <p>1-2.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: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(법원에서 결정)</p> <p>2.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: 재해관련 증빙서류(관공서에서 발급)</p> <p>3. 직계가족의 장기투병(10대 암, 중증질환 등): 의료비 정산서(1년 이상)</p> <p>4.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: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일자 확인 가능(기본증명서))</p> <p>5. 학생이 가장인 경우: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</p> <p>6.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(1-3급))인 경우: 장애인증명서,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(소득분위 8구간 이하)</p> <p>7. 다문화가정 자녀: 다문화가정 확인서(소정양식, 관련기관장 확인서),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(소득분위 8구간 이하)</p> <p>※ 다문화가정지원센터, 사회복지관,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(택 1)</p> <p>8. 다자녀(3명 이상) 세대로 2명 이상이 대학에 재적(단,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): 주민등록등본 1부, 대학 재학·휴학증명서 각 1부</p> <p>9. 위 1-8항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: 학장·지도교수의 추천사유서(사유 상세 기술),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(소득분위 4구간 이하)</p> <p><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> '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⇒ 장학금 ⇒ 증명서발급' 에서 출력 가능</p> |
| 비 고 | | <p>1. 상기 증빙서류 중 '사본'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'사본' 제출 (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) → 사본은 "A4"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</p> <p>2.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</p> <p>3. 기한 내 미제출 및 관련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대상자 선정에서 제외</p> <p>4. 그 외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함</p> |